**업무 제휴 협약서**

2017년 12월 18일

갑 : 주식회사 리걸인사이트

을 : 법무법인 리걸인사이트

주식회사 리걸인사이트(이하 “갑”이라 한다)와 법무법인 리걸인사이트(이하 “을”이라 한다)은 양사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갑”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상호 공동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이 계약은 양 당사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또는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3조 (서비스 내용)**

1. “갑”과 “을”의 제휴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2. “갑”이 제공하는 고소장 자동 작성 서비스 제공 및 향후 법률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 개발
3. “을”의 법무 서비스 및 노하우
4. 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의 고소장 자동 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호스팅 등 제반 업무 담당

2. “갑”의 고소장 자동 작성 프로그램의 산출물에 대한 “을”의 검토 및 최종본 완성

3. “갑”의 고소장 자동 작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물에 대한 ;ㅣ

**제4조 (프로모션 등)**

“갑”과 “을”은 \_\_\_\_\_\_\_\_\_증대를 위하여 상호협의 하에 프로모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광고 및 홍보)**

양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갑”이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민원처리)**

대상회원으로부터 제휴업무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신속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고객정보보안)**

1.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업무수행 목적으로 제공·활용함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 지침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을”의 고용인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제공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저장·출력·복사·가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갑”과 “을”은 고객정보를 전자적 데이터의 형태로 송·수신하는 경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암호화 등) 및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
4.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해당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이 계약이 종료,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고객정보를 “갑”에게 반환하거나 “갑”이 허락하는 방식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6. “갑”은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겨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 또는 “갑”의 고객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7. 이 조항은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의 종료, 해지, 해제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효하다.
8. “갑”은 “을”에게 이 계약과 별도로 “고객 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1.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 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알게 된 “갑”의 사장정보·경영정보 ·영업정보·기술정보·제품정보 기타 모든 정보 및 계약체결사실 자체(이하”비밀정보”라 함)를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누설·제공하거나 이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비밀정보 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을”의 임직원 기타 사용인에 한해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임직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비밀유지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4. 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그 성질상 반환이 불가한 경우 “갑”이 허락하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청, 담보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라 “을”이 “갑”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경우 “을”은 “갑”이 정한 동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청, 담보제공 등을 하는 경우라도 “을”은 제3자에 대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만약 양수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양수인과 함께 “갑”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해제)[[1]](#footnote-1)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 또는 지연할 경우 상대방에게 [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통보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기간 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 파산 또는 회생개시 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
4. 제3자로부터 주요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5.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가 발생하거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6. 해당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영업취소 또는 폐업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7.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8. 일방이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당사자간에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9. 기타 관계 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의 변경 또는 법원의 명령 등으로 이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10. 이 계약이 해제, 해지되거나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일방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귀책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제2항 제7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등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책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직·간접적인 손해 일체(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포함)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불가항력)

1. “을”은 정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장비, 시스템, 프로세스 등을 구비·구현하고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전쟁, 폭동, 내란, 천재지변, 법률의 제·개정 또는 정부의 조치 등과 같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및 불완전 이행 등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동 사실의 발생을 통지하고 최대한 조속히 이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불이행 또는 지연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이행의 지체가 [ ]일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별도의 추가 책임부담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에서 정한 불가항력 사유로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을”은 해지 또는 해제 시점까지 “을”에게 발생한 실제 비용만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갑”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대금이 이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해지 또는 해제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법규준수 및 일부무효)

1.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련 법규·정부지침· 감독규정·고시·법원의 명령 등(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 및 환경, 보건, 안전, 노동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기타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변경된 경우, “갑”과 “을”은 제정 또는 변경된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제정·변경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나 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 단, 이 계약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이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 (청렴의무)

1. “갑”과 “을”은 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상대방의 계열사 또는 상대방을 대리하는 중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이나 이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 및 공기업의 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또는 과도한 식사/접대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 임직원과 도박, 금전대차, 공동투자, 인사청탁, 고용보장 등 부적절한 행위(“비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 또는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체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이유로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의무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4. “갑”과 “을”은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한다.
5. “갑” 또는 “갑”의 임직원을 상대로 “을” 또는 “을”의 임직원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양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제의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상대방의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하도록 한다.
7. “을”은 이 계약서 외에 “갑”의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협조하는 뜻으로 별첨된 윤리실천협약서를 숙지한 후 서약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석)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해석에 의하며, 상호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0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의 변경은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변경 계약서는 이 계약에 우선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1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_\_\_년 \_\_\_\_\_월 \_\_\_\_\_일

“갑”

서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이름 \_\_\_\_\_\_\_\_\_\_\_\_\_\_\_\_\_\_\_\_

대표명 \_\_\_\_\_\_\_\_\_\_\_\_\_\_

“을”

서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이름 \_\_\_\_\_\_\_\_\_\_\_\_\_\_\_\_\_\_\_\_

대표명 \_\_\_\_\_\_\_\_\_\_\_\_\_\_

**윤리실천협약서**

와 는(은) 윤리경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의 원칙임을 깊이 인식하고 경영활동의 동반자로서 공정거래와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첨부된 『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할 것을 협약합니다.

또한, 양사는 첨부된 『윤리실천강령』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업무 및 경영에 차질,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포함한 어떠한 거래상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불이익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협약합니다.

|  |  |
| --- | --- |
| **구분** | **주요항목** |
| 금품수수 | 양사의 임직원은 현금, 수표, 유가증권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상품권, 회원권(골프, 헬스 등), 항공권, 이용권 등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협력업체 방문 시 주유상품권, 교통비 등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승진, 전보, 명절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하거나 받지 않는다.  임직원 산행, 체육대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양사 임직원은 지원 및 후원조의 금품(상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 향응 및  비용전가 | 양사 임직원은 향응 및 과도한 식사·접대를 하거나 받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내기(골프, 고스톱, 포커, 기타)를 하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해외 동반 출장 시 임직원의 공적, 사적인 비용을 대신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어떠한 형태의 비용처리도 요청하지 않는다. |
| 청탁 | 양사 임직원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사적인 부탁 및 의뢰(보험가입, 각종 할인권 판매 등)를 받은 경우 단호히 거절한다. |
| 정보활용 | 양사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양사의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양사 임직원은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양사의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에 대한보호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한다. |
| 기타 | 양사 임직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며 고의적인 업무지연 및 불이익을 행하는 임직원이 있을 경우, 양사 임직원은 해당 회사의 감사부서로 신고한다.  양사 임직원은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향응이나 금품제공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_\_\_\_\_\_\_\_\_\_년 \_\_\_\_\_월 \_\_\_\_\_일

회사명 담당자 대표이사 서명/인

회사명 담당자 대표이사 서명/인

1. 제휴업무가 금융관련 업무인 경우 14일 이내에 시정통보 사유 추가 1. “을”의 책임 하에 있는 자가 금융질서 문란자 (예; 명의도용자, 개인정보유출자, 이중계약자, 카드불법할인, 연체대납 등의 전력이 있는 자)라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2. “을”의 책임 하에 있는 자가 당사 대출과 관련하여 상품과 관계 없는 분야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등 상품판매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footnote-ref-1)